

(사) 한국지반공학회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1996년	1월	29일	제정
2005년	5월	23일	개정
2007년	12월	28일	개정
2008년	4월	21일	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2011년	9월	22일	개정
2012년	12월	21일	개정
2014년	5월	23일	개정
2016년	9월	19일	개정
2016년	12월	12일	개정
2019년	6월	3일	개정
2021년	2월	8일	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이하 ‘학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한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전문위원회 활동의 기본방향은 학회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계속교육, 국제 학술교류, 각 위원회 관련 국가건설기준 검토,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둔다.

제2조 (설치) 학회의 소그룹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규칙에 따라 기술위원회, 연구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분류) 전문위원회는 기술위원회, 연구회, 지역위원회로 구분하며 표 1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분류기호의 순서는 설치년도 및 가나다순으로 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임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적정 인원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위원장(유고시 선임된 위원장 포함)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이를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위원장후보추천서(표 2 양식)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전담이사를 통해 위원장 후보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3월부터 차차년 2월까지)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재임의 경우 그 필요성과 대상자의 해당 전문위원회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①항의 절차에 의해 차기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 간사,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간사가 다수일 경우 총괄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① 회장단 및 임원,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이는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4월 정기회의는 당해년 사업계획 토의 등을 의제로 한다.
- ③ 12월 정기회의는 당해년 실적보고 및 토의, 차년도 사업계획 토의 등을 의제로 한다.

제6조 (예산) 전문위원회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정산한다.

- ① 학회는 각 기술위원회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한다.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소관 전담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운영경비 외에 최대 200만원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기술위원회에 지원되는 총 경비는 기술위원회 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학회는 각 지역위원회에 연간 최대 20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 ③ 학회는 각 연구회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 ④ 회의비는 가급적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회원) 전문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 ① 한국지반공학회 회원의 신청 및 해당 전문위원회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4개 이내의 전문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 전문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전문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전문위원회는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계속교육, 국제 학술교류, 국가건설기준 및 신기술 검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1월 말에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전담이사의 조정과 이사회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 ② 각 전문위원회가 주관하는 발표회 등 행사는 학회의 사업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소관 전담이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③ 각 전문위원회의 학술발표, 세미나 등의 논문집은 학회의 논문 형식과 일치해야 한다.
-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학술세미나, 학술발표, 교육 등 행사 후에 해당 자료집 5부를 컴퓨터 파일과 함께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 ⑤ 3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는 학술행사는 그 주관자를“한국지반공학회”로 표기한다.
- ⑥ 각 전문위원회는 세계지반공학회(ISSMGE)의 기술위원회(TC)에 상응하는 담당 TC를 결정하여 국제활동을 수행한다.

제9조 (기술자문) 학회의 학술, 기술적 의견을 묻는 외부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답변을 준비하며, 학회의 공식의견 심의를 위한 기술자문회를 운영한다.

- ① 위원장 : 전문위원회 전담이사
- ② 위 원 :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 기타 위원장이 선임한 자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 운영규칙에 준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2. 표 1은 전문위원회 신설 또는 폐지 시 제3조 (분류)에 따라 수정한다.

표 1. 2025년 3월 현재 전문위원회 현황

분류기호	위원회 이름	설치 순서	설치 년도	비고
KGSTC-1	기초기술위원회	1	1992	
KGSTC-2	사면안정기술위원회	1	1992	
KGSTC-3	연약지반기술위원회	1	1992	
KGSTC-4	지반IT융합기술위원회	1	1992	2009년 정보화시공기술위원 명칭 변경
KGSTC-5	지반굴착기술위원회	1	1992	
KGSTC-6	지반진동기술위원회	1	1992	
KGSTC-7	터널기술위원회	1	1992	
KGSTC-8	지반신소재기술위원회	1	1992	
KGSTC-9	해안·항만기술위원회	1	1992	2007년 준설매립기술위원회 명칭변경
KGSTC-10	암반·지질기술위원회	2	1996	2012년 암반기술위원회 명칭변경
KGSTC-11	지반조사기술위원회	2	1996	
KGSTC-12	지반환경기술위원회	3	2000	2016년 복원
KGSTC-13	댐·제방기술위원회	4	2005	
KGSTC-14	재해대책기술위원회	4	2005	
KGSTC-15	에너지플랜트기술위원회	5	2009	2012년 에너지플랜트기술위원회가 지반환경기술위원회와 합병으로 명칭 변경 2015년 지반환경기술위원회와 분리
KGSTC-16	지반역학 및 불포화지반기술위원회	8	2012	
지-1	강원지역위원회		2009	
지-2	광주·호남지역위원회		2009	
지-3	인천지역위원회		2009	
지-4	대전·충청지역위원회		2011	
지-5	부산·울산·경남지역기술발전특별위원회		2012	2016년 동남권지부 창립
지-6	대구·경북지역위원회		2011	
연-1	동토지반연구회		2012	
연-2	신뢰성기반한계상태설계법연구회		2012	
연-4	전력구조물연구회		2014	
연-5	교통지반연구회		2015	
연-6	철도지반연구회		2022	

표 2.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서

차수	이름	재임 기간(년)	주요 활동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임기 수행 여부 - 연임 여부 - 임기 수행 기간 등 	